

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기간제직원의 채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결위기간만큼 기간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1.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는 직원
2. 제28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직원
3. 제30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직원

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“**한다**”를 “하되,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「공무원임용령」 중 제57조의7제2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”로 한다.

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하게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이 경우 퇴직준비교육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기간제직원의 채용) 다</u>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 <u>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</u> <u>하여 결위기간만큼 기간제직원</u> <u>을 채용할 수 있다.</u> 1. <u>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</u> <u>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는 직</u> <u>원</u> 2. <u>제28조에 따라 30일 이상의</u> <u>병가를 실시하는 직원</u> 3. <u>제30조에 따라 30일 이상의</u> <u>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직원</u>
제22조(휴직) ①·② (생략)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 1.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은 1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「산업재해보 상보험법」 제37조에 따른 업 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<u>한다</u>.	제22조(휴직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 ③ ----- 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하되, <u>의학적 소견 등을</u> <u>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</u>

2. ~ 5. (생략) ④ (생략) 제34조(교육훈련)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장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「공무원임용령」 중 제 57조의7제2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제34조(교육훈련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<u>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하게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이 경우 퇴직준비교육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.</u>
---	---